

가업승계 사업무관자산 범위 개선방안

경기대학교 김한수

목차

- I. 현행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문제 및 개선방안
- II. 공동경영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

I.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문제 및 개선방안

I-1 현행 가업상속공제 대상

가업상속공제 금액 = 상속재산 중 가업 해당 법인 주식 \times [1 - (사업무관 자산가액 / 총자산가액)]

[사업무관 자산]

- ① 비사업용 토지
- ② 업무무관 부동산 등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
- ③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라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
- ④ 과다보유현금
- ⑤ 법인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 중인 주식, 채권 및 금융상품

I.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문제 및 개선방안

I-2 현행 세제 문제점

1-2-1 사업무관 자산의 문제점

구분	취득/보유시점 세법상 불이익	기업승계시점 불이익	
비사업용토지	있음	있음	
업무무관 임대부동산	있음	있음	
대여금	① 업무무관가지급금, 특수관계자 대여금 : 있음 ② '①제외' 대여금 : 없음	있음	
과다보유현금	없음	있음	
업무무관 주식, 채권, 금융상품	① 원칙 : 없음 ② 과점주주의 간주취득, 합병/증자/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	영업활동	없음
		투자/재무활동	있음

I.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문제 및 개선방안

I-2 현행 세제 문제점

1-2-2 사업무관 자산의 보유목적

구분	세부 계정과목	보유 목적 또는 발생 원인	
대여금	가지급금(임원대여금)	법인 통장 인출 중 거래내용 불분명	
	직원대여금	전세금 또는 생활자금 목적 등 복리후생 성격	
	관계회사 등 대여금	관계회사 자금지원 목적	
	거래처 대여금	거래처 지원 목적	
과다보유현금	현금및현금성자산	기업의 안정적 운영 목적(공재식, 2006)	
업무무관 주식, 채권, 금융상품	관계회사 주식 등	영업활동 목적	부품 등 안정적 공급
		투자/재무활동 목적	배당, 시세차익 목적
	국채, 공채, 회사채	투자목적	이자, 시세차익 목적
		강제취득	차량/토지/건물 취득 시 의무
	단기금융상품	여유자금 이자수익 획득 목적, 구속성예금(꺾기)	
	장기금융상품	여유자금 이자수익 획득 목적, 구속성예금(꺾기)	

I. 현행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문제 및 개선방안

I-3 개선방안

1-3-1 대여금

- ① (현행 세법)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'사업무관자산'으로 간주함
- ② (개선 방안) 사업목적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여금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은 '사업무관 자산'에서 제외

구분	세부 계정과목	개선방안
대여금	가지급금(임원대여금)	불인정(현행 규정과 동일)
	직원대여금	전세보증금 등 직원 복리후생 목적의 대여금으로 확인 가능 ⇒ '사업무관자산'에서 제외
	관계회사 등 대여금	관계회사 재무구조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불가능한 경우 ⇒ 법인이 입증 가능하면 '사업무관자산'에서 제외
	거래처 대여금	매입 거래처의 재무구조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불가능한 경우 ⇒ 법인이 입증 가능(예 :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)하면 '사업무관자산'에서 제외

I. 현행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문제 및 개선방안

I-3 개선방안

1-3-2 과다보유현금의 계산 방식 개선

① (현행 세법) 보유목적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보유 현금액의 150%를 초과하면 '과다보유현금'으로 분류함. 평균 보유 현금액을 계산할 때 **기말 현재 보유액**으로 계산

② 개선 방안

구분	세부 계정과목	개선방안
과다보유현금	현금및현금성자산	<p>① (적극적 개선방안) 사업무관자산 범위에서 '현금및현금성자산'을 제외</p> <p>② (소극적 개선방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'평균 보유 현금액'을 매 사업연도 말이 아닌 매월 말 현금및현금성자산 잔액을 계산평균 보유 현금액 = 상속개시일 현재 현금 보유액 -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

I. 현행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문제 및 개선방안

I-3 개선방안

1-3-3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에 대한 조문화로 2세 경영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

세부 계정과목	개선방안	
관계회사 주식 등	영업활동 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법원 판례(2018두39713) 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거래구조 등을 종합해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판단함 • 이후 국세청과 조세심판원도 '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'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
	투자/재무 활동 목적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수직적 계열화 방식으로 관계회사 등의 주식 보유 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사업관련 자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음 ⇒ 관계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매출액 일정비율 이상이면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문화 ② 수평적 계열화 방식으로 관계회사 등의 주식 보유 시 사업무관 자산으로 판정 받을 수 있음 ⇒ 해외 현지 인건비, 물류비용 등을 고려해 해외자회사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사업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명문화

I. 현행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문제 및 개선방안

I-3 개선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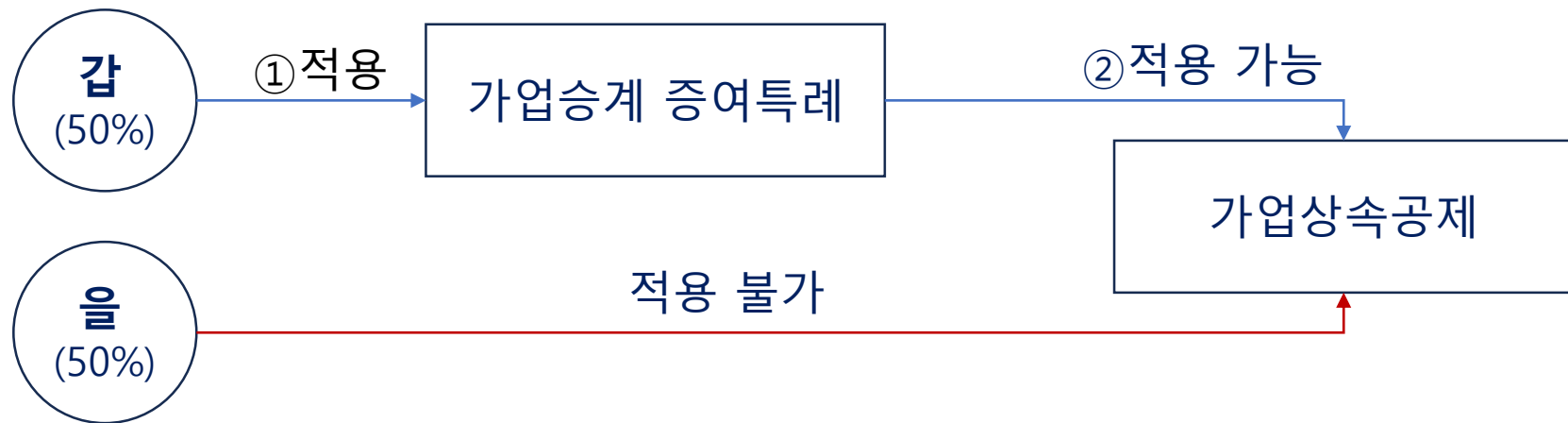
1-3-3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에 대한 조문화

계정과목	개선방안	
국채, 공채, 회사채	투자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금융상품, 주식, 채권 등을 취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낮추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함 • 이러한 자금운영 방식을 고려해 사업관련 자산으로 인정해야 함
	강제취득	<p>관련 법률에 따라 자산 취득 시 강제 취득하는 국채 등은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</p>
금융상품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사업무관자산으로 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]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여유자금 확보 목적과 구속성 예금을 구분하기 어려움 • 기업승계 후 업종 변경 등을 위해 필요한 여유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움 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개선방안]</p> <p>(적극적 개선) 사업무관자산에서 제외 (소극적 개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승계 시 '기업승계 시 사업계획'에 금융상품의 사용 목적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'사업무관자산'에서 제외 • 일정기간까지 미사용 시 이자상당액 추징 ⇒ 사업목적으로 사용 유도 	

II. 공동경영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

II-1 문제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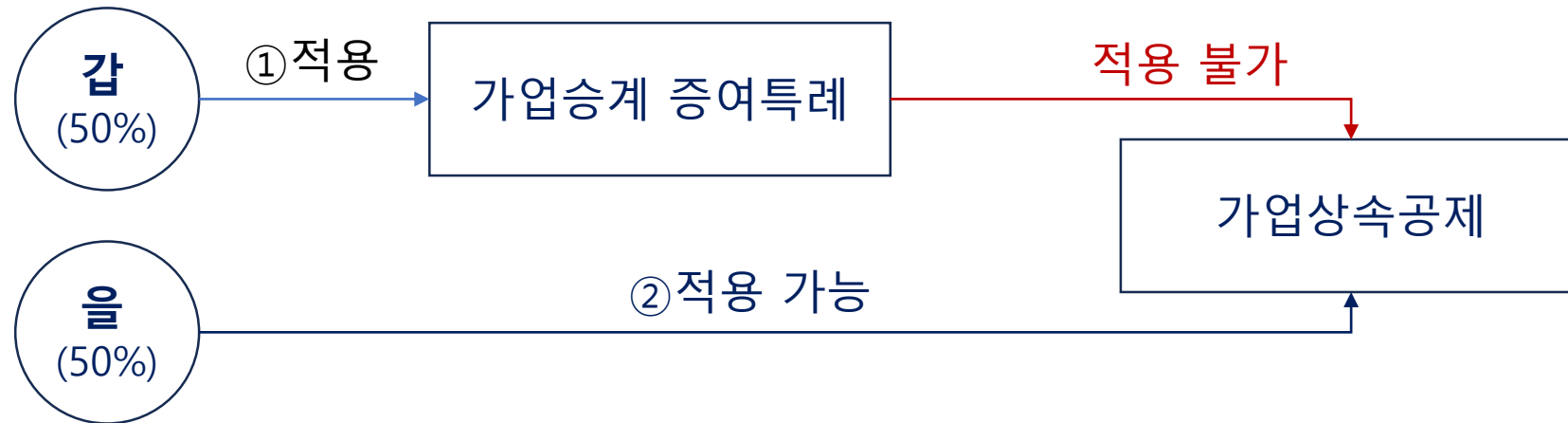
질의	회신 내용
<p>갑(지분 50%)과 을(지분 50%)이 공동창업해 경영. 갑의 자녀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 받은 후 을의 자녀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(재산-1654, 2009.8.10)</p>	<p>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하며,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당초 수증자 1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 적용</p>



II. 공동경영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

II-2 개선방안

- ① 공동경영기업의 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의 증여 특례를 적용 받은 후 다른 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의 증여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
- ② 이미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의 증여 특례를 적용 받은 경영자의 자녀는 중복·적용 받지 못하도록 규정


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